

「2025 아트페어 육성지원」 사업 공모 면접 심의 결과 안내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국내 아트페어의 시장성, 국제적 역량 향상을 위해 「2025 아트페어 육성지원」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2025년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공개 모집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15개 단체가 지원하였으며, 행정심의를 통과한 15개 단체 중
면접 심의를 통해 최종 8개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본 지원 사업 공모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신 모든 단체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심의개요

- (심 의 명) 「2025 아트페어 육성지원」 참여단체 공모 심의
- (심의일정) 2025. 3. 7.(금)
- (심의위원) 외부 전문가 6인

*가나다순 정렬

연번	성명	주요경력
1	김정은	이안복스 대표
2	박동기	성남문화재단 전시기획부장
3	박은영	이화여자 대학교 부교수
4	정필주	광주비엔날레 전시팀 팀장
5	조상인	서울경제신문 차장
6	추성아	독립 큐레이터

○ (심의기준)

심의지표			
심의지표	가중치	세부지표	
목적의 부합성 및 적절성	10	공모 사업 목적 및 취지에 맞는 기획의 부합성(5) 중장기 사업 계획 수립 여부 및 구체성(5)	
조직 구성의 전문성 및 안정성	15	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 및 체계적인 조직구성 여부(5) 조직위원회 및 사무국의 지속성·안정성(5) 프로그램 규모에 따른 내·외부 인력 배치 계획의 적절성(5)	
추진 계획의 구체성 및 차별성	프로그램 기획력	30	프로그램 기획의 차별성·참신성·다양성(10) 사업 기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5) 홍보·마케팅 방안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5) 공간 계획의 타당성 및 장소의 적합성(5) 추진 일정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5)
		25	사업 규모 대비 예산 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15) 재원조성 계획의 수립 정도 및 실현가능성(10)
기대효과	20	프로그램이 해당 아트페어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및 중장기 기대 효과(10) 국내 미술시장에 예상되는 파급효과 정도(10)	

□ 선정 결과

- (선정 결과) 총 8개 단체(5개 확정, 3개 조건부)

*e나라도움 접수순 정렬

연번	단체명	아트페어명	지원금액(원)	비고
1	주식회사악수	웁(OOP) 비주얼 아트 페스티벌	50,000,000	
2	아터테인	2025 연희아트페어	31,000,000	
3	신한카드주식회사	2025 더프리뷰용산 with 신한카드	50,000,000	
4	어반브레이크운영위원회	어반브레이크 2025	50,000,000	
5	아트쇼부산	아트부산 2025	150,000,000	
6	울산국제아트페어주식회사	2025 울산국제아트페어	50,000,000	※ 조건부선정
7	(사)한국화랑협회	Kiaf SEOUL 2025	150,000,000	※ 조건부선정
8	(사)부산화랑협회	2025BAMA 제14회 부산 국제화랑아트페어	100,000,000	※ 조건부선정

- (심의 총평)

꾸준한 지원 덕에 국내 아트페어가 점진적으로 진화, 발전하고 있다. 올해 지원 단체의 주요 관심사는 예술과 기술의 접목을 중심으로 한 AI 활용, 미술과 음악 등 장르간 융합에 대한 집중으로 감지된다. 이와 같은 다양화로 관람객 및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가에 있어서는 재원 마련과 중장기 계획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예산 운영 계획에 있어 홍보 비용 및 대행 비용이 과도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프로그램 기획의 시의성과 진취적 시도가 있는지 여부를 유의해서 심사했다.

아트페어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관객과의 소통, 현대미술에 대한 교육, 신규 컬렉터 유입 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 (교부조건) 교부신청 전 센터와의 협의를 통하여 사업 구체화 및 예산 조정 필수(필요 시 문체부, 예경, 심의위원간 검토 추진)

※ 센터와의 지원 사업의 구체화 및 예산 조정을 협의하지 않을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조건부 선정단체의 경우, 검토사항 확인 및 승인이 된 건에 한하여 최종 지원여부가 확정됨

□ 선정단체 의무사항(필독)

- ① 사업에 참여하는 대표자 및 실무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필수

-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제출(해당 양식)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및 이수 확인서 제출

- ②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온·오프라인 교육 이수 및 수료증 제출

- 교육 과정은 추후 공지 예정

③ 아트페어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진행 협조

- 센터가 별도 용역을 운영하며, 선정단체는 개최 기간 중 조사 부스 및 출입증(모니터링용 티켓 등)을 제공하여야 함
- 조사 분석을 통해 아트페어별 구매자 특성, 만족도 정보 등의 결과를 개별적으로 제공할 예정임

④ 매년 시각예술실태조사((구)미술시장실태조사) 응답 필수

- 아트페어 성과(판매액, 관람객수 등) 요청 정보 제출

⑤ 모든 홍보물·인쇄물에 문화체육관광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로고 삽입

⑥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관람객 및 인파 관리 계획 마련

⑦ 「예술인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지원사업 수행시 예술인(기획자 포함)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예술 활동을 제공받는 경우 피고용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필수

※ 불이행시 「예술인 복지법」 제18조(과태료)에 의거하여 추후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 '문화예술용역'이란?

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하여 예술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일정 기간 받는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뜻하는 것으로, 고용·도급·업무위탁·파견 등 그 형태를 막론하고 모두 문화예술용역에 포함

⑧ 선정단체 대상 사전 워크숍·성과 공유회, 회계교육 참석

⑨ e나라도움 상 집행·정산·실적보고·정보공시 등 성실 이행

□ 유의사항

- 지원 신청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해당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지원사업 추진 과정중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지침을 따라야 함

- 심의기준에 의거한 선정 및 교부 확정 후 참여 부스 수, 개최 장소 등 사업의 규모가 변경될 경우 지원 결정액이 축소·조정될 수 있음
- 동 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적 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관련한 모든 책임은 지원단체에게 있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부정수급 행위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 임직원 연관(직계존비속 포함),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거래는 불가함

*제4장 보조사업 집행관리(보조금법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관련)

*제13조(보조금 사용 및 제한)

- ④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 집행 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와는 거래할 수 없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 예술인 권리 보호를 위해 기획자, 비평가, 작가사례비(아티스트피) 등 지급 시 문체부에서 고시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 체결
- 미술창작대가제도 도입(22.2)에 따라 작가사례비 지급 시 참여비 및 창작사례비를 구분하여야 함
- 2천만원 초과 용역 계약 시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누리장터) 이용 필수
- 사업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사업내용 불이행시 또는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 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됨

* 정산/실적보고서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지정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

** 보조금 정산 시 반드시 센터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검사 후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기간 종료일은 전시 운영 종료일 이후 30일 이내로 제한됨

- 통합 홍보물 제작 시 제작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
- 사업평가를 위한 현장 모니터링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지원신청 예산의 산출 근거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명확한 산출 근거가 없는 예산 책정은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공급가액으로 예산을 계획해야 하며 부가세는 단체에서 직접 부담해야 함
-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심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이행 시 선정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교부 확정 이후 사업기간 내 집행한 금액만 인정됨
 - 교부 신청은 행사 시작일 기준 2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사전 및 사후 집행은 환수 조치됨
 - ※ 지원금과 자부담 사용 혼용 금지, 타(대표 명의 포함) 통장으로 지원금 이체 금지, 지원금 현금 인출 금지, 사업 수행 후 정산 확정 전 지원금 통장 해지 금지 등
- 공모요강,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사업운영 가이드, 의무 및 유의사항 등 규정을 미숙지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해당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제출 후 수정 불가)

□ 향후 일정(안)

- (사전 워크숍) 2025. 3. 중 대면 워크숍 진행(선정단체 필참)

□ 관련 문의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정보팀 02-708-2254 / ji24@gokams.or.kr